

석유대체연료 [] **제조·수출입업** [] **개** **시**
 [] **판매업** [] **휴** **업** **신고서**
 [] **폐** **업**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처리기간 | 즉시 |
|------|------|------|----|

| | |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신고인 | 대표자 성명 |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 |
| | 주소 | |
| | 상호 | 전화번호 |
| | 소재지 | |

사업의 개시 년 월 일 사업개시

| | |
|-------------|----|
| 사업의 휴·폐업 | 기간 |
| | 사유 |

사업의 재개시 년 월 일 사업 재개시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32조제4항·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6항·제4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

| | | |
|------|--|-----------|
| 첨부서류 |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|-----------|

처리절차

